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전 석 기 의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전석기 의원입니다.

지난 3월 26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미세먼지를 ‘사회재난’에 포함시키는 골자의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에 포함시켰던 것을 삭제하여 인용규정에 의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고,

그 외에 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동절기 운영기간,

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및 관련 조례 표준안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 신고기한 등에
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한편,
‘19년 1월 1일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
반영하려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,
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
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